



목 포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명단 제출 요청(2차 안내)

1. 관련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후)

- (근 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3.4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아동학대 조회 대상은 의료인만 해당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후)

-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채용 시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라. 노인복지법 제39조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9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후)

- (근 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전직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전직원 채용 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위와 관련, 범죄경력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불입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에 전 직원 명단 제출하되 면허(자격) 칸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일반직원으로 구분하여 2025.9.12.(금)까지 문서24 또는 이메일 (susanna76@korea.kr)로 제출바랍니다. ※ 개인정보포함으로 팩스제출 불가

붙임 범죄경력조회 점검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목 포 시 장

수신자 관내 의료기관 180개소

주무관 민보영 의약관리팀장 박수란 보건위생과장 박윤희 전결 2025. 9. 12.

협조자

시행 보건위생과-20881 접수

우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목포시보건소 (산정동)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061-270-8936 팩스번호 061-270-3597 / susanna76@korea.kr / 비공개(6)

소중한 내 삶을 지키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합시다!